

의안번호	2213952
의 퇴 인	전현희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 계 번호	25D5905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2억 1,000만원씩 총 60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집단고충민원 조정인제도 도입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조정인제도 도입	조정수당	756	756	756	756	756	3,780
	회의참석수당	227	227	227	227	227	1,135
	용역제공 사례금	227	227	227	227	227	1,135
	합계	1,210	1,210	1,210	1,210	1,210	6,050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조정인)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인을 둔(제1항) 제1항에 따른 조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 위원회의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권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행정기관등에서 조정과 관련된 분야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분야의 조정사안에 대하여 조정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2	안 제7조(조정인의 업무)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함)의 주재 2.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3. 조정안의 작성 4.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8조(실태 확인에 따른 조정)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으로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제1항)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을 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지 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4	안 제20조(조정인의 지정)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정신청(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이 있고, 제1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단민원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지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조정인은 1인으로 함. 단, 해당 집단민원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2인 이상의 조정인을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5	안 제21조(조정회의 등)	조정인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조정인은 조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22조(조정을 위한 조사)	조정인은 집단민원의 내용,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등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조정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1. 당사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 자료·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 3. 조사사항과 관련된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5. 관계 전문가에 대한 자문 6. 조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재량규정
7	안 제28조(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행정기관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29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조정 관련 연구기관 또는 집단민원 조정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집단민원 조정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 집단민원의 조정기법 및 이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조정인)	○	
2	안 제7조(조정인의 업무)	○	
3	안 제18조(실태확인에 따른 조정)	— (미대상)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¹⁾ 에 따른 직권 조정과 유사한 내용임
4	안 제20조(조정인의 지정)	○	
5	안 제21조(조정회의 등)	○	
6	안 제22조(조정을 위한 조사)	— (미대상)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조정과 같이 조정절차에 부수된 조사임
7	안 제28조(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	동 실태조사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행정조사일 경우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일 경우 그 대상·범위·수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8	안 제29조(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	×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조정전문가의 교육·양성, 조정 기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별도 기관 지정 또는 설립은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조정인에 대한 조정수당(안 제6조·제7조·제18조·제20조·제22조)과 조정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21조),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신청인 5명 이상 집단고충민원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100명 이상 집단고충민원은 평균 1,519건임

[표 2]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고충민원 처리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신청인 수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평균
5명 ~ 99명	5,389	5,462	5,061	4,236	3,583	23,731	4,746
100명 이상	1,687	1,759	1,572	1,389	1,190	7,597	1,519
합계	7,076	7,221	6,633	5,625	4,773	31,328	6,265

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처리된 민원실적으로 평가한 것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본 추계에서 조정인 1명당 월 2건의 집단고충민원을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호²⁾에 따른 100명 이상 집단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정인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집단고충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조정인 수 추정

(단위: 건, 명)

집단고충민원 평균 건수 (100명 이상)	집단민원 처리 건수 (1개월당)	필요 조정인 수
1,519	2	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조정인에 대한 조정수당, 회의참석수당,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³⁾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²⁴⁾에 따라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2)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조정신청의 요건) ①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집단민원의 조정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만, 집단민원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법에 따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3)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은 신청인 면담, 관계기관 협의, 고충민원의 조사·연구, 실지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월 1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4)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는데,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 국선대리인 풀(pool)⁵⁾을 운영하고 있음

[표 4]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사건 1건당 보수(수당)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지급사유	보수(건당)
사건 종료시 까지 활동	청구인 상담, 각종 신청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당해 사건으로 위원회 회의 2회 이상 출석·진술	50만원
	관련 사건 병합 처리 (위원회 회의 1회 이상 출석·진술)	
	청구인 상담, 각종 신청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위원회 회의 1회 출석·진술	40만원
	관련 사건 병합 처리 (위원회 회의 불출석)	
	청구인 상담, 각종 신청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위원회 회의 불출석)	30만원
	청구인 상담실적만 제출 (보충서면 미제출)	1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회의참석수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상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의 단가⁶⁾를 참고하여 15만원으로 가정함
-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상임위원에 대한 안전검토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월 30만원으로 가정함
- 다만,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28조)와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연구 등(안 제29조)은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5) 서울·경기 34명, 그밖의 지역 56명 등 총 90명 수준으로 국선대리인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조정인에 대한 조정수당, 회의참석수당,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을 각각 합산하여 추계함
 - 조정수당: 조정인 수(63명)에 개월 수(12개월), 조정건수(월 2건), 조정수당 단가(50만원)를 각각 곱하여 산출
 - 회의참석수당: 조정인 수(63명)에 개월 수(12개월), 조정회의 횟수(월 2회)와 회의 참석수당 단가(15만원)를 각각 곱하여 산출
 - 별도의 용역제공 사례금: 조정인 수(63명)에 개월 수(12개월)와 사례금 단가(30만원)를 각각 곱하여 산출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2억 1,000만원씩 총 60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집단고충민원 조정인제도 도입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조정인제도 도입	조정인 수(A, 명)		63	63	63	63	63	－
	조정건수/회의횟수(B, 건, 회)		2	2	2	2	2	－
	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조정수당	단가(D, 천원)	500	500	500	500	500	－
		소계 (E=A×B×C×D)	756	756	756	756	756	3,780
	회의참석수당	단가(F, 천원)	150	150	150	150	150	
		소계 (G=A×B×C×F)	227	227	227	227	227	1,135
	용역제공 사례금	단가(H, 천원)	300	300	300	300	300	
		소계 (I=A×C×H)	227	227	227	227	227	1,135
합계(J=E+G+I)		1,210	1,210	1,210	1,210	1,210	6,050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집단고충민원 처리 실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사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의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